

学術交流協定書

日本国，北海道，函館市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研究院・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
並びに
大韓民国，慶尚南道，統營市
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研究院・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と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は水産科学，海洋科学及び関連する諸科学におけるこれまでの協力と交流の実績を評価し，これをさらに発展させるため，学術交流協定を締結する。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研究院・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と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とは，以下について同意する。

- (1) 相互の利益のために研究者の交流を促進する。
- (2) 大学院学生及び学部学生の交流を促進する。
- (3) 相互に関心のある研究分野における共同研究を促進する。
- (4) 現在の施設並びに設備による若手研究者の養成に協力する。
- (5) 出版物や学術情報の交換を行う。

研究者及び学生の受け入れは，可能な範囲で行う。両大学間の交流のための財政措置については，個別の具体的事例に則して打ち合わせするものとする。

この協定書は，調印の日から効力を生じるものとし，有効期間は5年間とする。ただし，協定書の有効期間満了の3ヶ月前までに，どちらの大学からも特段の申し出がない場合には，この協定はその後5年毎に自動更新されるものとする。

この協定書は，日本語及び韓国語で各2部作成され，両文書は等しく正文である。

2008年12月15日

原 彰彦

(署名)

北海道大学
大学院水産科学研究院・大学院水産科学院・
水産学部
研究院長・学院長・学部長 原 彰彦

장 충식

(署名)

慶尚大学校
海洋科学大学
学長 張 忠植

학술 교류 협정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과

일본국, 북해도, 하코다테시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연구원 · 대학원수산과학원 · 수산학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연구원 · 대학원수산과학원 · 수산학부는 수산과학, 해양과학 및 관련되는 모든 과학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협력과 교류의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연구원 · 대학원수산과학원 · 수산학부는 아래 사항에 동의한다.

- (1) 상호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자의 교류를 촉진한다.
- (2) 대학원학생 및 학부학생의 교류를 촉진한다.
- (3) 상호의 관심분야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한다.
- (4) 현존의 시설 및 설비로써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는데 협력한다.
- (5) 출판물이나 학술정보를 교환한다.

연구자 및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행한다. 양 대학간의 교류를 위한 재정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협의하기로 한다.

이 협정서는 조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유효기간은 5년간으로 한다. 단, 협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어느 쪽의 대학으로부터도 특별한 제의가 없을 경우, 이 협정은 그 후 5년 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이 협정서는 한국어 및 일본어 각 2통으로 작성되며, 양 문서들은 동일한 본문이다.

2008年12月15日

장 충 식 (서명)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 장 장 충 식

原 彰 泰 (서명)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연구원 · 대학원수산과학원
수산학부

연구과장 · 학원장 · 학부장 하라 아끼히코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研究院・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と
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との間における学生交流に関する覚書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研究院・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と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との間における学生交流は2008年12月15日に締結された学術交流協定に基づき、次のとおり実施する。

1. 派遣する学生の選考は、その都度先ず派遣大学が行い、その最終選考は受入れ大学が行い、入学を許可する。申請は、原則として、各大学の定める出願期限までに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2. 学生の在学期間は、原則として1年以内とする。
3. 両大学は、1年に最大2名までの学生を相互に受入れるものとする。
4. 学生は受入れ大学に入学する前に、聴講及び研究ができるように可能な限り受入れ国の言語を習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又は水産学部の学生は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の関連する大学院または学部のいずれかに受入れるものとし、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における受入れ身分は「交換留学生」である。
慶尚大学校海洋科学大学の学生は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又は水産学部のいずれかに受入れるものとし、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院又は水産学部における受入れ身分は「特別研究学生」又は「特別聴講学生」とする。
学生は引き続き派遣大学での学位取得資格を有し、受入れ大学での学位取得資格を有しない。
6. 学生は、受入れ大学における授業科目の履修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受入れ大学は、履修上の制約がある科目について、交流学生の受講を許可しない権利を有する。
7. 受入れ大学は、派遣大学に各交流学生の学業成績証明書を送付するものとし、派遣大学の規定に基づき派遣大学が単位認定を行うものとする。
8. 受入れ大学は、当該学生から検定料、入学料及び授業料を徴収しないものとする。
9. 受入れ大学は、学生が適正な価格の宿舎を見つけ得るよう助力するものとする。
10. 学生は、宿舎費、健康保険費を含めて自己に関わる経費を支払う責任があるものとする。
11. 学生が受入れ大学に滞在中に非常の事態が発生した場合、双方の大学は相互に協力して当該学生の安全の確保に努めるものとする。
12. 両大学は、覚書が失効した場合でも、この覚書に基づき受け入れた学生が在籍している間は、上記に定める支援を提供する。
13. この覚書は、調印の日から効力を生じ、その見直し時期は本協定と同一とする。ただし、修正の必要がある場合は双方の合意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2008年12月15日

原 彰彦 (署名)
北海道大学大学院水産科学研究院
・大学院水産科学院・水産学部
研究院長・学院長・学部長 原 彰彦

장 충식 (署名)
慶尚大学校
海洋科学大学
学長 張 忠植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연구원·대학원수산과학원
· 수산학부간의 학생교류에 관한 각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연구원·대학원수산과학원·수산학부
간의 학생교류는 2008년 12월 15일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파견학생의 선발은 먼저 파견대학에서 행하고, 최종선발은 수용대학에서 행하여 입학허가를 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각 대학이 정한 기간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2. 학생의 재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한다.
3. 양 대학은 1년에 최대 2명까지의 학생을 상호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다.
4. 학생은 수용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청강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받아들이는 국가의 언어를 습득해야만 한다.
5.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학생은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원 또는 수산학부에 소속되는 것으로 하며,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원 또는 수산학부에서의 신분은 「특별연구학생」 또는 「특별청강학생」으로 한다.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원 또는 수산학부의 학생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의 관련 대학원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으로 하며,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의 신분은 「교환유학생」이다. 학생은 파견대학에서 학위취득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수용대학에서는 학위취득자격을 갖지 않는다.
6. 학생은 수용대학에서 수업과목의 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용대학은 이수 상의 제약이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교류학생의 수장을 허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7. 수용대학은 파견대학에 각 교류학생의 학업성적 증명서를 송부하는 것으로 하고, 파견대학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견대학이 단위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8. 수용대학은 해당학생으로부터 검정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수용대학은 학생이 적당한 가격의 숙소를 정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0. 학생은 기숙사비,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본인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한다.
11. 학생이 수용대학에 체재 중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 대학은 상호 협력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12. 양 대학은 각서가 실효됐을 경우에도 이 각서에 근거하여 교류학생이 재적하고 있는 동안은 상기에 정한 지원을 제공한다.
13. 이 각서는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 하고, 그 개정은 본 협정과 동일한 시기로 한다. 단,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다.

2008年12月15日

장 충 식 (서명)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 장 장 충 식

原 彰 考 (서명)

북해도대학
대학원수산과학연구원·대학원수산과학원
수산학부

연구과장·학원장·학부장 하라 아끼히코